#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 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향후 계약자를 총칭함)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4년 04월 03일**이며 이는 청약 자격과 거주기간 산정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의 우선공급(20세대)은 사업주체 현장 접수 및 자체 당첨자 선정으로 진행되며, 일반공급(48세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임대신청 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계약자와 임차인, 실거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주 전 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에도 임대인(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해당 주택은 계약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으며 향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해당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금지사항 등기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무조건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비율로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1년(매년 갱신) |
|---|---|---|---|
| 보증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 | |
| 보증료 | 보증기관의 보증요율에 의함. | 부담주체 | 임대인 75%, 임차인 25% |
| 납부방법 | 임대인 청구 시 지정된 계좌로 납부 | | |

■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보증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건물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②항에 따라 년 5% 범위 내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6항 규정에 의해 재개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릅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써 2024년 2월 14일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보존등기 완료 후 임대인의 자격이 위 조합에서 포괄양수인으로 변경되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우선 공급 | | 일반 공급 | | 계약체결 | |
|---|---|---|---|---|---|---|
|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일 시 | 2024년 04월 04일(목)<br>(09:00 ~ 16:00) | 2024년 04월 04일(목)<br>16:30 이후 | 2024년 04월 08일(월) ~ 09일(화)<br>(09:00 ~ 17:30) | 2024년 04월 15일(월)<br>16:00 이후 | 2024년 04월 05일(금)<br>(10:30 ~ 16:30) | 2024년 04월 16일(화)<br>~ 18일(목)<br>(10:30 ~ 16:30) |
| 방 법 | 현장 접수 | 신청 타입별<br>공개 추첨 결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br>(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청약Home 개별조회<br>(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임대신청 사무실 방문계약 | |
| 장 소 | 임대신청 사무실<br>대구광역시 동구 경대로126, 113동 301호<br>(신암동,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임대신청 사무실<br>대구광역시 동구 경대로126, 113동 301호<br>(신암동,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 ○ |

**■ 본 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Ⅰ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2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15101호(2024.04.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건축물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 제2024-02호(2024.02.29.)」로 (부분)준공인가를 필하였음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74-20번지 일원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지상 15층 17개동 총 1,2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민간임대주택 68세대

■ 입주예정일 : 2024년 04월 05일(금) ~
(입주일자는 계약시 협의함)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공급유형 | 타입 |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
|---|---|---|---|---|---|---|---|---|---|---|
|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 계 | | | | |
| 민간 임대 | 2024-950020 | 우선공급 | 39 | 39.4596 | 28.2496 | 67.7092 | 28.2652 | 95.9744 | 24.7743 | 14 |
| | | 일반공급 | 39 | 39.4596 | 28.2496 | 67.7092 | 28.2652 | 95.9744 | 24.7743 | 30 |
| | | 우선공급 | 49 | 49.1352 | 34.9227 | 84.0579 | 35.1961 | 119.2540 | 30.8492 | 6 |
| | | 일반공급 | 49 | 49.1352 | 34.9227 | 84.0579 | 35.1961 | 119.2540 | 30.8492 | 18 |
| | | 합 계 | | | | | | | | 68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습니다.(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 부분은 임대인의 권리로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 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 전세보증금 및 납부일정

- 우선공급

(단위 : 세대, 원)

| 공급유형 | 동 | 타입 | 층별 | 세대수 | 총세대수 | 임대보증금 | 계약금 | 잔금 | 비고 (옵션사항) |
|---|---|---|---|---|---|---|---|---|---|
| | | | | | | | 계약시 | 입주시 | |
| 우선공급 | 113동 (3호 ~ 6호) | 39 | 3층 | 2 | 14 | 150,000,000 | 10,000,000 | 140,000,000 | - 에어컨<br>- 냉장고<br>- 세탁기<br>- TV거치 붙박이장<br>- 3구 가스레인지 |
| | | | 4층 | 1 | | 155,000,000 | 10,000,000 | 145,000,000 | |
| | | | 5~10층 | 9 | | 160,000,000 | 10,000,000 | 150,000,000 | |
| | | | 11~13층 | 2 | | 165,000,000 | 10,000,000 | 155,000,000 | |
| | 113동 (1호, 2호) | 49 | 3층 | 1 | 6 | 180,000,000 | 10,000,000 | 170,000,000 | - 에어컨 2대(거실, 안방)<br>- 붙박이장<br>- 아일랜드장<br>- 3구 가스레인지 |
| | | | 4층 | 1 | | 185,000,000 | 10,000,000 | 175,000,000 | |
| | | | 5~10층 | 3 | | 190,000,000 | 10,000,000 | 180,000,000 | |
| | | | 11~14층 | 1 | | 195,000,000 | 10,000,000 | 185,000,000 | |
| 합계 | | | | | 20 | | | | |

• 일반공급 (단위 : 세대, 원)

| 공급유형 | 동 | 타입 | 층별 | 세대수 | 총세대수 | 임대보증금 | 계약금 | 잔금 | 비고 (옵션사항) |
|---|---|---|---|---|---|---|---|---|---|
| | | | | | | | 계약시 | 입주시 | |
| 일반공급 | 113동 (3호 ~ 6호) | 39 | 3층 | 2 | 30 | 150,000,000 | 10,000,000 | 140,000,000 | - 에어컨<br>- 냉장고<br>- 세탁기<br>- TV거치 붙박이장<br>- 3구 가스레인지 |
| | | | 4층 | 3 | | 155,000,000 | 10,000,000 | 145,000,000 | |
| | | | 5~10층 | 15 | | 160,000,000 | 10,000,000 | 150,000,000 | |
| | | | 11~13층 | 10 | | 165,000,000 | 10,000,000 | 155,000,000 | |
| | 113동 (1호, 2호) | 49 | 3층 | 1 | 18 | 180,000,000 | 10,000,000 | 170,000,000 | - 에어컨 2대(거실, 안방)<br>- 붙박이장<br>- 아일랜드장<br>- 3구 가스레인지 |
| | | | 4층 | 1 | | 185,000,000 | 10,000,000 | 175,000,000 | |
| | | | 5~10층 | 9 | | 190,000,000 | 10,000,000 | 180,000,000 | |
| | | | 11~14층 | 7 | | 195,000,000 | 10,000,000 | 185,000,000 | |
| 합계 | | | | | 48 | | | | |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 기간에 입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개시 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⑥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①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1항 ②호 따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인 임대사업자가 따로 정한 금액으로서 임차인은 상기 임대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 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 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확정판결에 의한 제3자의 채권추심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전환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 안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임대기간

-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임대차계약을 10년간 4회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준

- 해당 임대주택은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될 경우,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가격 및 조건은 부동산 매매 상관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협의할 수 있으나 우선 분양(매수) 권한은 없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의 분양합니다.

##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①항 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구광역시 조례」 제45조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20세대) - 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서류접수 및 호수 배정,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자로서 사업시행자(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통보한 무주택자**
- 우선공급 대상자 접수 미달 시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후 우선공급세대와 일반공급세대의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호실을 지정하여 공급하기로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당 사업시행자(포괄양수인 포함)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등기우편, 유선 및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며 핸드폰 전화번호 변경 및 수신거부로 인한 미확인, 해당 접수 기간 내 청약 미접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선공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포괄양수인 포함)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일반공급 (48세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tps://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타입별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 모집공고일(2024.04.03.)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신청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신청 타입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 및 호수를 선정하며, 신청 타입별 200%의 예비임차인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임차인 소진 이후 남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규정[입주지정기간 게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을 적용하고 또한 부적격된 및 미계약, 계약 해제, 계약 해지된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임의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우선 공급 | | 일반 공급 | |
|---|---|---|---|---|
|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 일 시 | 2024년 04월 04일(목)<br>(09:00 ~ 16:00) | 2024년 04월 04일(목)<br>16:30 이후 | 2024년 04월 08일(월) ~ 09일(화)<br>(09:00 ~ 17:30) | 2024년 04월 15일(월)<br>16:00 이후 |
| 방 법 | 현장 접수 | 신청 타입별 공개 추첨 결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br>(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청약Home 개별조회<br>(www.applyhome.co.kr<br>로그인후 조회 가능) |
| 장 소 | 임대신청 사무실<br>대구광역시 동구 경대로126, 113동 301호<br>(신암동,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신청 타입별<br>공개 추첨 결정 |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br>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안내

| 구 분 | 내용 |
|---|---|
| 이용안내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
| 이용방법 및 절차 |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br>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br>→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구 분 | 청약신청금 | 내용 |
|---|---|---|
| 모든 타입 공통 | 100,000원<br>(금일십만원) |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br>•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전지점 창구에 비치)<br>• 청약신청금<br>•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br>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청약신청 위임용)<br>- 청약자의 인감도장<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창구접수는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신청 사무실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일반공급 대상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2024.04.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우선 공급은 현장 공개 추첨 결정하며 일반공급은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임차인 선정 : 신청 타입별 200%를 무작위로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당첨자 발표 일시 | 당첨자 발표 장소 |
|---|---|---|
| 우선 공급 | 2024년 04월 04일(목) 16:30 이후 | 임대신청 사무실에서 신청 타입별 공개 추첨 결정 |
| 일반 공급 | 2024년 04월 15일(월) 16:00 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 | |
|---|---|
| 동 · 호실 결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일반공급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
| 기타사항 | • 한국부동산원은 신청 타입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및 호수를 선정하며, 신청 타입별 200%의 예비임차인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임차인 소진 이후 남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규정[입주지정기간 게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을 적용하고 또한 부적격된 및 미계약, 계약 해제, 계약 해지된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임의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구 분 | 환불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예비입차인)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은행(창구)청약자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br>•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Ⅲ 임대차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 계약기간 및 장소

| 임대차 계약체결 기간 | | 계약체결 시간 | 장 소 | 계약금 납부 |
|---|---|---|---|---|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 |
| 2024년 04월 05일(금) | 2024년 04월 16일(화) ~ 18일(목)<br>(3일간) | 10:30 ~ 16:30 | 임대신청 사무실<br>대구광역시 동구 경대로126, 113동 301호<br>(신암동,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임차인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상기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 세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①항 2호 규정에 의해 임대인이 임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아래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임대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Sh수협은행 | 1130-0061-8708 | 신암6재정비촉진구역<br>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113동 1301호 당첨자 홍길동“ → 113-1301홍길동) |

- 임대신청 사무실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또는 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어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계좌로 임대보증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임대보증금 납부 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해당 주택은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 분 | 내용 | |
|---|---|---|
| 일반공급 | 본인 계약시<br>(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br>• 주민등록등본, 도장(대리인 계약시 인감도장)<br>•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등) |
| | 대리인 계약시<br>(배우자 포함) |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일체<br>•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br>•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대리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배우 자와 계약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

## Ⅳ 입주 일정 안내

### ■ 입주 지정 기간

| 입주지정기간 |
|---|
| 2024년 04월 05일 (금) ~ |

• 2024년 04월 05일 계약서 작성 이후 잔금을 선납하신 당첨 세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납부 순서는 계약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고.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계약체결 시 안내한 납부 금액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해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입주 1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입주 일정을 통보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일부터 월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 시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확인하시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이사) 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합니다. (관리비예치금 계좌는 계약시 별도 통보 예정)
• 지정된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을 납부 기한 이후 납부 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 기간 | 초과 1개월 | 1개월 이상 |
|---|---|---|
| 적용 연체료율 | 10% | 해지 |

## V 기타 유의사항

### ■ 일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임대신청 사무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해당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단지관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사우나, 키즈카페, 주민운동시설(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등) 등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내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G.X룸,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독서실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관련

- 해당 모집 주택의 향은 전세대 남서향(거실기준)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해당 타입의 옵션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9타입 : 냉장고, 에어컨 1대(안방 겸 거실), 세탁기, TV거치붙박이장, 3구 가스레인지 등
  - 49타입 : 에어컨 2대(거실, 안방), 붙박이장, 아일랜드장, 3구 가스레인지 등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체(임대인) | 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170171-0023113 |
| 시공사 |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 110111-6770154, 110111-0006349 |
| 수탁관리 / 분양대행사 | ㈜밸류메이커스 | 170111-0948656 |

- 상기 임대주택은 사업주체(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써 2024년 02년 14일 “임대주택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보존등기 완료 후 임대인의 자격이 위 사업주체(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수탁관리 / 분양대행사(㈜밸류메이커스)로 변경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 구분 | 보증서번호 | 보증기관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임대보증금보증 | 제 03412024-703-0000006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임대보증금 전액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

## ■ 임대신청 사무실 위치 및 분양안내

| | |
|---|---|
| 임대신청 사무실<br>대구광역시 동구 경대로126, 113동 301호<br>(신암동,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 임대문의<br>☎ 053-213-5559<br>(임대신청 사무실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신청 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 후)

개정 2022. 3.23
개폐정리 2022. 3.23

##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 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 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금액】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15.8.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舊)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채권자가 제4조제1항제3호의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주채무자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 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6.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8. 보증서 발급 시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변경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9.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사의 구상권 행사(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등)가 제한되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증액·갱신 포함)상 확정일자를 갖추어(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거주이전 또는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15.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6.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보증채권자가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8. 보증채권자가 제12조(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 보증서 발급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보증서 발급 시의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가.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을 초과하게된 경우 (다만, 주택가격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금액을 담보권 설정금액에서 공제함)
 다.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20.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3.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③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④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없어진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 발생시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없어진 경우)에는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 민법상 약정 및 법정해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경공매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